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95
----------	------------

제 안 년 월 일 : 2021년 11월 25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이 안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이미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져 같은 시행일에 요금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수도 요금과 겹치면서 현행 ‘공공용’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으로의 통합에 따른 인상 효과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업종구분은 「수도 조례」와 통일시키되 기존 ‘공공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현행 요금체계를 따르도록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 가. 2021.12.31. 당시 별표2에 의하여 공공용 요율의 적용을 받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표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2의 가. 공공용 요율표를 적용토록 함. (안 부칙 제1조)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12.3

1. 당시 별표 2에 의하여 공공용 요율의 적용을 받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표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 2의가. 공공용 요율표를 적용한다.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부칙 신설>	<u>부칙</u>	<u>부칙</u>
	제1조(시행일) 이 조 례는 2022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34조제1항제3 호의 개정규정은 20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 례는 2022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 만, 2021.12.31. 당시 별표2에 의하여 공 공용 요율의 적용을 받던 수용가에 대하 여는, 별표2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20 22.12.31.까지는 종 전의 별표2의 가. 공 공용 요율표를 적용 한다.
	제2조(누수 감면에 대 한 적용례) 제34조제 1항제3호의 개정규정 은 2023년 1월 1일 누 수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 지의 누수량에 대해 서는 날 수대로 계산	제2조(누수 감면에 대 한 적용례) ----- ----- ----- ---- (개정안과 동일) ----- ----- -----

	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u>제3조(사용업종 구분</u> <u>변경에 관한 경과조</u> <u>치) 이 조례 시행 전</u> <u>에 공공용으로 분류</u> <u>되었던 경우에 2021</u> <u>년 12월 31일까지의</u> <u>하수배출량에 대해</u> <u>서는 종전의 규정에</u> <u>따라 요금을 부과한</u> <u>다.</u>	----- -----. <u><삭 제></u>
--	--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에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12.3

1. 당시 별표 2에 의하여 공공용 요율의 적용을 받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표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 2의가. 공공용 요율표를 적용한다.

제2조(누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누수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신 설>	제34조(감면) ① ----- ----- ----- -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인 경우: 면제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4. ~ 12. (생략)	4.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table><tr><th rowspan="2">구분 업종</th><th rowspan="2">사용구분(㎡)</th><th colspan="3">연도별 단가(원/㎡)</th></tr><tr><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r><tr><td rowspan="3">가정용</td><td>30이하</td><td>330</td><td>360</td><td>400</td></tr><tr><td>30초과~50이하</td><td>770</td><td>850</td><td>930</td></tr><tr><td>50초과</td><td>1,180</td><td>1,290</td><td>1,420</td></tr><tr><td rowspan="3">욕탕용</td><td>500이하</td><td>360</td><td>400</td><td>440</td></tr><tr><td>500초과~2,000이하</td><td>450</td><td>500</td><td>550</td></tr><tr><td>2,000초과</td><td>520</td><td>570</td><td>630</td></tr><tr><td rowspan="3">공공용</td><td>50이하</td><td>610</td><td>670</td><td>730</td></tr><tr><td>50초과~300이하</td><td>970</td><td>1,060</td><td>1,170</td></tr><tr><td>300초과</td><td>1,100</td><td>1,210</td><td>1,330</td></tr><tr><td rowspan="6">일반용</td><td>30이하</td><td>420</td><td>460</td><td>500</td></tr><tr><td>30초과~50이하</td><td>830</td><td>910</td><td>1,000</td></tr><tr><td>50초과~100이하</td><td>1,250</td><td>1,380</td><td>1,520</td></tr><tr><td>100초과~200이하</td><td>1,510</td><td>1,660</td><td>1,830</td></tr><tr><td>200초과~1,000이하</td><td>1,580</td><td>1,740</td><td>1,920</td></tr><tr><td>1,000초과</td><td>1,670</td><td>1,840</td><td>2,030</td></tr><tr><td>유출 지하수</td><td>㎡당</td><td>330</td><td>360</td><td>400</td></tr></table> ※ 비고 1. 매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table><tr><th>업종</th><th>구분내용</th></tr><tr><td>가정용</td><td>「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td></tr><tr><td>욕탕용</td><td>「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td></tr><tr><td>공공용</td><td>「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td></tr><tr><td>일반용</td><td>「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td></tr></table>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용	30이하	330	360	400	30초과~50이하	770	850	930	50초과	1,180	1,290	1,420	욕탕용	500이하	360	400	440	500초과~2,000이하	450	500	550	2,000초과	520	570	630	공공용	50이하	610	670	730	50초과~300이하	970	1,060	1,170	300초과	1,100	1,210	1,330	일반용	30이하	420	460	500	30초과~50이하	830	910	1,000	50초과~100이하	1,250	1,380	1,520	100초과~200이하	1,510	1,660	1,830	200초과~1,000이하	1,580	1,740	1,920	1,000초과	1,670	1,840	2,030	유출 지하수	㎡당	330	360	400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table><tr><th rowspan="2">구분 업종</th><th colspan="2">2022년부터</th></tr><tr><th>사용구분(㎡)</th><th>단가(원/㎡)</th></tr><tr><td rowspan="3">가정용</td><td>30이하</td><td>400</td></tr><tr><td>30초과~50이하</td><td>930</td></tr><tr><td>50초과</td><td>1,420</td></tr><tr><td rowspan="3">욕탕용</td><td>500이하</td><td>440</td></tr><tr><td>500초과~2,000이하</td><td>550</td></tr><tr><td>2,000초과</td><td>630</td></tr><tr><td rowspan="6">일반용</td><td>30이하</td><td>500</td></tr><tr><td>30초과~50이하</td><td>1,000</td></tr><tr><td>50초과~100이하</td><td>1,520</td></tr><tr><td>100초과~200이하</td><td>1,830</td></tr><tr><td>200초과~1,000이하</td><td>1,920</td></tr><tr><td>1,000초과</td><td>2,030</td></tr><tr><td>유출지하수</td><td>㎡당</td><td>400</td></tr></table>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table><tr><th>업종</th><th>구분내용</th></tr><tr><td>가정용</td><td>「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td></tr><tr><td>욕탕용</td><td>「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td></tr><tr><td><삭제></td><td><삭제></td></tr><tr><td>일반용</td><td>「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td></tr></table>			구분 업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삭제>	<삭제>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용	30이하	330	360	400																																																																																																																																							
	30초과~50이하	770	850	930																																																																																																																																							
	50초과	1,180	1,290	1,420																																																																																																																																							
욕탕용	500이하	360	400	440																																																																																																																																							
	500초과~2,000이하	450	500	550																																																																																																																																							
	2,000초과	520	570	630																																																																																																																																							
공공용	50이하	610	670	730																																																																																																																																							
	50초과~300이하	970	1,060	1,170																																																																																																																																							
	300초과	1,100	1,210	1,330																																																																																																																																							
일반용	30이하	420	460	500																																																																																																																																							
	30초과~50이하	830	910	1,000																																																																																																																																							
	50초과~100이하	1,250	1,380	1,520																																																																																																																																							
	100초과~200이하	1,510	1,660	1,830																																																																																																																																							
	200초과~1,000이하	1,580	1,740	1,920																																																																																																																																							
	1,000초과	1,670	1,840	2,030																																																																																																																																							
유출 지하수	㎡당	330	360	400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구분 업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삭제>	<삭제>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현행	개정안
<부칙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12.31. 당시 별표2에 의하여 공공요금의 적용을 받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표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2의 가. 공공요금표를 적용한다. 제2조(누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누수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